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22,288,330	15,668,650
일반회계	486,787,748	14,603,632
특별회계	35,500,582	1,065,017
기타특별회계	35,500,582	1,065,017
수질개선 특별회계	11,494,392	344,832
주택사업 특별회계	6,345,225	190,357
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	866,096	25,983
자활기금 특별회계	2,058,097	61,743
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	11,957,939	358,738
주차장관리 특별회계	550,883	16,526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	299,007	8,970
기반시설 특별회계	68,513	2,055
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1,860,430	55,81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: 해당없음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160,493천 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,400,000천 원이며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6,513,531천 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